

상지대학교 혁신적 수업모델 운영 지침

2021.06.01.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무분장규정 제9조 제3항 및 교수학습개발지원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 혁신적 수업모델을 확산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혁신적 수업모델”이란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고, 교수자는 이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수업방법을 말하며 상지대학교의 혁신적 수업모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플립러닝(Flipped-Learning) : 역진행 수업방법으로 학습자가 수업 전(Pre-Class)에 교수자가 제공한 온라인 강의 동영상상을 미리 학습한 후에 수업시간(In-Class)에는 선행된 학습내용을 적용하여 토의·토론, 문제해결, 학습과제, 실습 등 학습자와 상호작용하거나 심화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수업방법
2. 문제중심학습(Project-Based Learning, Problem-Based Learning) : 학습자들이 제시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전략과 영역지식을 배우며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습자들의 유연한 지식,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 학습, 효과적인 협업 능력, 내재적 동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방법
3.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졸업 논문 대신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수업방법
4. 코티칭(Co-Teaching) :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두 명 이상의 교수자가 수업을 함께 계획, 준비하고, 진행하며, 평가하는 수업방법

제3조(수업개설) 혁신적 수업모델을 적용한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배포한 수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를 준수하여 혁신적 수업모델 유형별 수업내용, 학생 상호작용, 피드백 및 평가 등의 구체적인 수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혁신적 수업모델을 개설할 수 있다.

제4조(확산 지원) 혁신적 수업모델 적용 교과목의 확산을 위하여, 혁신적 수업모델 적용 교과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과목 기획을 위한 연구 개발비
2. 교과목 개설 인원 기준 완화 적용
3. 교수업적평가 점수 반영

제5조(수업의 운영) 혁신적 수업모델 적용 교과목은 수업계획서에 표기하여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수업의 질관리)** ① 혁신적 수업모델 적용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문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혁신적 수업모델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교육성과관리센터는 유형별 교과목수,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③ 혁신적 수업모델의 질 관리를 위해서 혁신적 수업모델의 CQI 보고서는 별도 관리한다.

- 제7조(혁신적 수업모델 적용 우수교과목 인증)** ① 교육성과관리센터는 개설된 혁신적 수업모델 적용 교과목 중 강의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일 경우 해당 교과목을 혁신적 수업모델 적용 우수교과목으로 인증한다.
- ② 혁신적 수업모델 적용 우수 교과목 인증 효력은 2년간 유지되며 수강신청시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교육성과관리센터는 혁신적 수업모델 적용 우수 수업 인증 교과목의 운영이 혁신적 수업모델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21.06.01.>

본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